



무배당 실손의료비보상(갱신형) 특별약관1106 사업방법서 별지

1. 상품구조

- 순수보장형

2. 보험의 종류

- 장기손해보험 / 장기기타보험

3. 보험종목의 명칭

-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상(갱신형) 특별약관1106

4. 보험의 목적

- (1) 피보험자의 신체
- (2)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

5.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기간, 보험료 납입주기 및 보험가입나이

보험기간	보험료 납입기간	보험료 납입주기	보험가입나이
3년만기	전기납	월납, 3개월납, 6개월납, 연납	0세~(80-보험기간)세
2년만기			
1년만기			

6.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상(갱신형) 특별약관1106(이하 「갱신형 계약」이라 함)의 갱신에 관한 사항

(1) 「갱신형 계약」의 약관 적용에 관한 사항

- 회사는 「갱신형 계약」의 갱신 계약에 대하여 갱신 전 약관을 적용함. 단,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등의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함

(2) 「갱신형 계약」의 갱신보험료 및 적용 제도에 관한 사항

- 회사는 「갱신형 계약」에 적용할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함
- 회사는 매사업년도 종료일까지 「갱신형 계약」의 갱신계약에 적용할 위험률을 재산출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후 사용하며, 갱신보험료는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해당계약의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해당 보험기간동안 적용함

(3) 「갱신형 계약」의 갱신보험료 통보에 관한 사항

- 회사는 「갱신형 계약」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서면,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함
- 회사는 「갱신형 계약」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「갱신형 계약」의 만기일의 다음날(이하 『갱신일』이라 합니다)에 갱신되는 것으로



함

(4) 「갱신형 계약」의 갱신보험료에 관한 사항

- 갱신계약 보험료가 최초계약 보험료와 비교하여 변동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

7. 배당에 관한 사항

-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.

8.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
- 없음

9.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상(갱신형) 특별약관1106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

- (1)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상(갱신형) 특별약관1106은 동기간에 판매중인 장기보험 전 상품에 부과하여 판매할 수 있음
- (2)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상(갱신형) 특별약관1106은 기본계약의 보장기간 내에서 3년 만기 자동 갱신으로 운영됨. 단, 갱신시점에서 기본계약의 보장기간의 잔여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 해당 잔여기간에 맞추어 2년만기 또는 1년만기로 갱신됨
- (3)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상(갱신형) 특별약관1106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상(갱신형) 특별약관1106을 부과한 기본계약을 따름

10. 기 타

- (1) 종합입원형은 상해입원형 및 질병입원형과 동시가입이 불가함
- (2) 종합통원형은 상해통원형 및 질병통원형과 동시가입이 불가함
- (3)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계약에 준함